

- 건축조례준칙중 개정령
-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
-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中 改正法律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 国土利用管理法中 改正法律
- 駐車場法中改正法律

건축조례준칙중개정령

건설부훈령제632호

건축조례준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12월 17

건설부장관 ㉠

건축조례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형태 및 색채 등”을 “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으로 한다.

제31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 (조경시설물의 설치) 시장(군수)은 식수부족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제13장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의 2 온돌의 시공

제39조의 2 (온돌의 시공방법) 구멍탄 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온돌의 시공자격) 구멍탄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작성기준**

온돌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온돌 기능사의 확보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례제정 대상 행정구역별로 실정에 맞추어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용어의 정의

구멍탄온돌 시공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한국공업규격 KS F 7010(구멍탄온돌 시공 지침)의 2 용어의 뜻에 따른다.

2. 구멍탄온돌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가. 구멍탄용 연소통 및 연소기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구멍탄온돌의 구조 및 시공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33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온돌의 구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

의 지형적 특성 및 기후적 특성, 특히 동절기의 기온·풍향·풍속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1) 연탄 아궁이 등이 있는 곳에서의 환기용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의 설치

2) 고래부분

가) 고막이

나) 고래바닥의 경사

다) 고래바닥 및 구들벽의 방수처리 및 단열층의 설치

라) 개자리

마) 구들장

바) 고래바닥과 구들장 밀면까지의 이격거리

사) 등바리

아) 킴돌

자) 킴터

차) 썩돌 및 사춤

3) 아궁이 부분

가) 고정식 아궁이와 이동식 아궁이의 시공순서구분

나) 고정식 연탄아궁이의 연소통 주위벽 및 바닥, 이동식 연탄아궁이의 합실벽, 아궁이 및 그 바닥의 방수처리 및 단열층의 설치

다) 분배관

라) 아궁이의 깊이

마) 연소통의 위치

바) 연소통의 받침

사) 공기관 및 공기조절 마개

아) 유도목

자) 합실아궁이(이동식연소통아궁이)의 높이

차) 합실아궁이문

4) 굴뚝부분

가) 굴뚝의 지붕면으로 부터의 돌출한 높이

나) 굴뚝의 내부단면적 및 굴뚝목의 단면적

다) 굴뚝목의 바람막이

라) 굴뚝모(연도)

바) 청소구멍

마) 굴뚝 개자리

사) 굴뚝갓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KS F 7010(구멍탄온돌시공지침) 및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6장 온돌공사를 참고하여 정한다.

도시설계의작성기준에관한규정

건설부훈령제650호

도시설계의 작성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12월 29일

건설부장관 ㉠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구역”이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공공 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3. “공중공간”이라 함은 1층 이외의 층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비영업용 공간을 말한다.
4.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서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2분의 1 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5.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6. “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7. “세가로”라 함은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로서 설계구역 안에서 보조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8.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 등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도시설계의 확정) ① 도시설계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하여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설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변경승인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시설계의 기본원칙)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종합 계획이 되도록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구역은 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

려할 것.

5. 앞으로도 도시개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6.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당해구역내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 질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제 5 조 (도시설계의 주요기준) ① 보행자 공간과 공공공지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보행자공간이나 공공공지 및 장차 조성될 공공공지등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개략적인 계획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보행자공간과 공공공지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계획하여야 한다.
3. 보행자동선과 자동차동선과의 교차를 줄이도록 한다.
4. 인접지역의 보행자공간 및 공공공지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② 구역안의 도로중 도시계획 도로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가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가로는 6미터 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가로의 배치는 자동차의 통과교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세가로는 인접지역과의 연결을 고려한다.
5. 기존의 도시계획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 폐지에 대한 발의가 가능하다.

③ 자동차의 출입구 및 공동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자동차의 출입구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간선도로를 피하여 이면 도로나 세가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2. 자동차의 출입구는 집약설치하여 보도의 분단이나 보행자의 통행방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자동차의 출입구는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 두지 아니한다.
4. 공동주차장은 동주차장을 사용하여 건축물에서 실제거리 1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공동주차장은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한다.
6.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 출입구의 위치와 공동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계획상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개략적인 위치·규모 및 계획등을 표시한다.
3.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착공시기나 완공시기를 표시한다.

제 6 조 (도시설계의 작성도서) 도시설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종류를 가감할 수 있다.
제 7 조 (설계제요소) 도시설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종류·요소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중인 도시설계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작성된 것.

[별표 1]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구분	분 내	용 법	위
설계구역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10 / 100이내	
대 지	규모·형상·면적의 최소한도	20 / 100이내	
대지안의 공지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20 / 100이내	
건축물의 규모	높이제한·층수제한	20 / 100이내	
건축물의 형태등	모양·용도·색채·지붕의 형태등의 변경	—	
공공조경	수종·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변경	—	
기존건축물	준치·철거·시정·증개축등	—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선	0.5미터이내의 변경	가구별길이의 50 / 100이내	

[별표 2]

도시설계의 작성도서			
도 서 명	표 시 내 용	비 고	
1. 종합개 념도	○도시설계의 목표 ○개발구상 ○공간분석과 기능별 공간배분 ○토지 및 공간이용 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시설의 배치 ○동선의 처리 ○녹지공간체계 ○기타 중요한 계획		
2. 주변구 역의 현 황도	○주변구역의 지형·기후 등 ○토지 이용 ○개발계획 ○기타		
3. 대상구 역의현황 도	○위치·구역·면적·인구 등 ○지형 및 토지이용 ○도시계획 사항 ○도시계획 시설 등 중요시설 ○기타		
4. 토지이 용 계획	○토지이용의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시설 ○기 타		
5. 교통처 리계획	○도시계획 도로 및 세가로의배치 ○주차장 ○기존도로의 현황 및 변경사항 ○보행자동선처리계획 ○기 타		
6. 건축규 제계획	○용도제한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규제· 권장· 유도등	
7. 공공시 설계획	○위 치 ○규 모 ○조치계획 등		
8. 공급처 리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의 간선시설 ○오물처리시설 ○공공구등		
9. 조경계 획	○조경기본계획 ○식재계획 ○조경시설물설치 계획 ○공공조경계획		
10. 기존건 축물의처 리계획	○기존건축물의 활용 ○기존건축물의 정리		
11. 제한사 항및권장	○강제규정 ○권장사항 ○완화규정 (건축법령의범위안)		

도 서 명 표 시 내 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
- 12. 개발사 ○개발계획
- 업의시행 ○공공투자계획
- 계획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계획 등
- [별표 3]

도 시 설 계 제 어 요 소

종	류	요	소	내	용
대 지		규모·형상·용도·분합 등		규제·권장·유도로 구분	
대지안의 공지		공지율·공지면적·공지의 위치·공공공지·공중공간 등			
건 축 물		건폐율·용적율·사선제한·높이제한·층수제한·용도 층별용도포함) 건축물의 배치·모양·색채 지붕의 형태			
도로 및 주차장		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차전용도로·건축 선지정·주차진입위치·주차장위치·보행자 통행로 등			
공공조경		위치·수종·시설물의 종류 등			
기존건축물		부적건축물로서 철거·시정·증축 등			
기 타		광고판·구조물 등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中 改正法律

法律第3,719號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인

1983년12월31일

국무총리 진 의 종
국무위원 김 성 배
건설부장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1981年12月31日, 이하 本條에서 같다)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법 공포전에 착공하여 1982年4月8日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과 증·改築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對象建築物”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림보전지역, 軍事施設保護區域, 海·空軍基地(보위구역을 포함한다)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常習災害地區 및 환경정비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재개발구역안에 있으나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이 법 공포당시 결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중 1986年12月31日까지 그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

4.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

5. 산림보전지역안에 있으나 영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第7條第1號중 “國·公有地”를 “國·公有地(關係法令에 의하여 그 處分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제27조 및 동법제31조(그 규정의 適用에 있어서 당해도로의 최소 所要幅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違反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構造安全, 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27조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第2項第1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學校, 畜舍, 孤兒院, 養老院, 마을會館, 마을共同作業場, 마을倉庫, 蠶室, 農水産物乾燥場, 公共用建築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와 類似한 建築物·小規模生産工場·住宅·小規模建築物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萬원이하

第9條第2項第2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號 但書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

法律第3,533號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附

則 第 1 項중 “1984年 6 月30日”을 “1985年 6 月30日”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이미 納付한 過怠料에 대한 措置) 市長, 郡守는 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를 納付한 者에 대하여는 그가 納付한 過怠料의 金額이 第 9 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金額보다 많은 때에는 그 差額을 지체 없이 還給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1,315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전두환 인

1983년12월31일

국무총리 진 의 중

국무위원 김 성 배
건설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대지” 다음에 “·벽”을 삽입한다.

제 11 조에 제 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 1 항·제 5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중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 16 조의 2 제 1 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 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 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의 2 제 4 항중 “제 1 항 단서의”를 “제 3 항 단서의”로 한다.

제 32 조의 3 중 “상하수도 공급시설”을 “상하수도시설”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 동 조 제 2 항 본문·제 2 호·제 3 호, 동 조 제 3 항 및 동 조 제 4 항과 제 10 조 제 1 항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별표 1]의 난밖의 하단에 동표의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 임대주택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윗표의 등록기준중 자본금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3]의 부표 제 8 호 가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 제곱미터당 1,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4,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7,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4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6,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000”으로, “연면적 3.3 제곱미터당 15,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0”으로, “연면적 3.3 제곱미터당 1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7,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8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8,000”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4,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600”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5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으로 한다.

[별표 3]의 부표 제 8 호 라목(2)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별표 3]의 부표 제 22 호중 “골프장의 허가”를 “골프장업의 신규등록”으로 하고, 제 23 호의 제목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매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로 하며, 동 부표 제 24 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 조 제 3 항중 “제 24 호 내지 제 26 호”를 “제 25 호·제 26 호”로 한다.

◇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종래 자가용승용차의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서울特別市 및 釜山直轄市의 경우에는 地下鐵道建設債券을 買入하면 第 1 種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義務가 면제되어 사실상 地下鐵道建設債券만 買入하도록 되었으나, 기타 地域의 경우에는 第 1 種 國民住宅債券과 그 밖에 地方條例에 의하여 上水道公債까지 買入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特別市 및 부산직할시 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國公債買入額에 차이가 있어 균형이 맞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가용승용차신규등록의 경우를 第 1 種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義務對象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賃貸住宅建設의 촉진을 위하여 賃貸住宅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기준

의 일부를 緩和함(令 [別表 1]).

나.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의 경우를 第 1 種 國民住宅債券 買入對象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國民住宅基金의 缺損額

을 補填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買入하여야 하는 第 1 種 國民住宅債券의 매입금액을 종전 금액의 약 10 % 上向調整함(令 [別紙 3] 附表 第 8 號 및 第 24 號).

(법제처제공)

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 法律第 3,707 號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①

198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진 의 중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김 성 배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21 條의 4 第 1 項 第 1 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土地所有權移轉의 경우 그 契約豫定金額이 標準地價 [당해 土地에 適用되는 第 29 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價 (이하 “標準地價”라 한다) 를 基準으로 하여 標準地價對象地域 公告日로부터 許可申請일까지의 都賣物價上昇率·地價變動率과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參酌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에 대통령이 정하는 適正率을 곱한 금액과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取得·管理에 소요된 비용액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第 21 條의 7 第 1 項중 “第 21 條의 2 의 規定에 의한 規制區域외에 있는 토지등의 去來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公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權利의 種類·面積·用途·契約豫定金額등 契約內容과”를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投機的인 去來가 成행할 우려가 있고 地價가 急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 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去來契約申告區域(이하 “申告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申告區域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所有權·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去來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公同으로 權利의 種類·面積·用途·契約豫定金額등 契約內容과”로 한다.

第 21 條의 7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등의 去來面積은 地域別, 用途別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面積이상으로 한다.

第 21 條의 7 第 5 項을 第 6 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 5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 第 21 條의 2 第 2 項 내지 第 7 項의 規定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審議·公告·통지·閱覽·效力發生時期·解除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規制區域”은 “申告區域”으로 본다.

第 21 條의 10 第 1 項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한다.

道知事は 管轄區域안의 土地가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土地의 所有者(당해

토지에 대하여 地上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 후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土地가 遊休地임을 決定할 수 있고, 그 決定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土地의 所有者에게 그 土地가 遊休地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 21 條의 10 第 1 項 第 1 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土地의 所有者가 당해 土地를 取得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地上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가 그 權利를 설정한 후 2 年이 경과된 경우

第 21 條의 10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은 그 管轄구역안에 第 1 項의 要件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거나 職權으로 調査하여 그 結果를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21 條의 10에 第 4 項 및 第 5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道知事は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 企業의 非業務用土地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他에 優先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遊休地임을 통지하고 公告할 수 있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遊休地의 통지를 한 경우에 第 21 條의 12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價格은 당해 土地가 標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第 21 條의 4 第 1 項 第 1 號에 規定된 價格의 범위내로 하고, 標準地價가 告示되지 아니한 地域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公인된 2 이상의 鑑定評價機關이 評價한 액을 基準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價格의 범위내로 한다.

第 28 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28 條 (地價動向調査등) 建設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土地去來規制制度의 實施,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書의 作成 기타 土地政策의 遂行을 위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價의 動向 및 土地去來의 狀況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29 條 第 5 項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야 하며, 國家·地方自治團體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 標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안에서 地價를 算定하거나 評價者가 調査·評價할 때에는 標準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價算定 및 調査·評價의 目的別로 이를 加減하여 適用할 수 있다”로 한다.

第 29 條의 2 第 1 項중 “調査·評價와”를 “調査·評價와 第

21條의 4 第 1 項 第 1 號에 의한 評價 및”으로 한다.
 法律第 3, 139號 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附則第 1 條 但
 書中 “第 3 章의 2 의 規定(第21條의16의 規定을 제외한다)”
 을 “第21條의 2 내지 第21條의 6 및 第21條의15의 規定”
 으로 하고, 同 第 3 條를 削除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 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適用例) 이 법 施行전부터 당해 土地에 대하여 所有

權·地上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가 그 權利를 取得 또
 는 設定한 후 2 年이 경과된 土地에 대하여도 第21條의10
 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③ (토지등의 去來契約申告 및 遊休地에 관한 규정의 適用을 위한 特例) 第21條의 2 내지 第21條의 4 의 規定은 法律第 3, 139號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附則 第 1 條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第21條의 7 의 規定 및 第21條의10의 規定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駐車場法中改正法律
 法律第3,708 號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통령 전두환 인

1983년12월31일

국무총리 진 의 중
 국무위원 김 성 배
 건설부장관

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2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2 條(定 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路上駐車場: 도로의 路面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區域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路外駐車場: 도로의 路面 및 교통광장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第 19條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주차장 설치명령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内部 또는 그 敷地안의 일정한 區域이나 隣近에 건축물에 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道路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道路交通法第 2 條10號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2 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第 2 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第 2 條第 2 號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6. “建築”이라 함은 建築法第 2 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건축(동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第 3 條중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守”로 한다.

第 5 條 및 第 6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5 條(權限의 委任) 이 법의 規定에 의한 建設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6 條(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등) ①第 4 條第 2 項·第 7 條第 1 項 및 第12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의 설치계획의 기준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②市場·郡守는 다음 각항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申請을 할 경우
2.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整備計劃案을 立案할 경우
3. 第 7 條第 1 項 및 第12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설치할 경우
4. 第12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許可를 할 경우

第 8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8 條(路上駐車場の 관리) ①路上駐車場은 第 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市長·郡守가 관리하거나 市長·郡守로부터 그 관리를 委託 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の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刑法第129 條 내지 第132 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 9 條第 1 項 및 第 4 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 5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第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躍上駐車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 (이하 이를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第2條第13號의 규정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市長·市守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加算金(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⑤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주차요금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徵收를 市長·郡守에게 委託할 수 있으며, 市長·郡守는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규정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1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條의 2(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善良한 관리자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駐車時間測定計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監視人이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①路外駐車場은 駐車場整備地區안에 있어서는 당해 郡市計劃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가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주차장정비 지구외의 郡市計劃區域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市長·郡守가 도시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②市長·郡守외의 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路上駐車場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路外駐車場은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路外駐車場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第2項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설치에 관한 許可基準은 大統領令으로, 第2項但書의 규정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설치기준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3條本文을 同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第3項 및 條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市長·郡守는 第1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市長·郡守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委託을 받아

路外駐車場을 관리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④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 규정에 準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로 본다.

第14條第2項중 “基準과”를 “料率과”로, “大統領令으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한다.

第15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市長 또는 군수외의 路上駐車場管理者가”를 “第12條第2項 本文의 규정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설치한 者가”로, “市長 또는 郡守의”를 “市長·郡守의”로 하며, 同條에 第3項 내지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第1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한 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12條第2項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設置되는 路外駐車場의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管理·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2項의 규정에 準하여 管理規程으로 정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위한 申告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管理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市長·郡守는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類似한 路外駐車場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均衡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第19條의 題目“(주차장의 附設)”을“(건축물부설주차장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을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로 하고, 同條第3項을 第6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 내지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의 일정한 區域에 建築物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別規模 및 주차장의 設置基準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建築物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일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建築物의 垜地 隣近에 數人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垜地境界線으로부터 隣近에 設置하는 建築物附設駐車場의 境界線까지의 直線距離의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을 市長·郡守에게 納付함으로써 建築物附設駐車場의 設置義務를 免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納付된 建築物附設駐車場의 설치에 필요한 費用을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物

設置의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市長·郡守는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駐車場の 설치에 필요한 費用을 納付한 건축물의 所有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市長·郡守가 設置한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장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여야 하며, 建築物의 所有者가 變更되는 경우에는 당장 建築物의 새로운 所有者가 前所有者의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장을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다.

第19條의 2 내지 第19條의 4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9條의 2 (建築物附設駐車장의 路外駐車場 用途로의 전용허가등) ①第19條第1項·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物附設駐車場面積중 그 設置基準面積을 초과하는 部分에 대하여는 市長·郡守의 허가를 받아 이를 路外駐車장의 用途로 轉用할 수 있다. 다만, 設置基準面積을 초과하는 部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경우에는 市長·郡守에게 보고하고 이를 轉用(이하 “轉用申告”라 한다)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轉用許可(轉用申告를 포함한다)를 받은 部分의 建築物附設駐車장에 관하여는 市長·郡守의 허가(전용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설치하게 되는 路外駐車장에 관한 第12條第3項 및 第4項과 第13條 내지 第18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19條의 3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의 操業駐車場)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全部 또는 一部를 荷役의 目的을 위한 操業駐車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의 4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使用禁止등) ①第19條第1項·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市長·郡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그 주차장의 原狀으로의 回復을 命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附置駐車장이 설치된 建築物을 建築法第42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條第3項 本문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道路·廣場 및 公園등의 지하에 路外駐車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路外駐車장의 設置에 관하여 第12條第2項 本문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때 또는 都市計画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第40條第1項 및 都市公園法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고, 路外駐車장으로 사용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2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路外駐車장의 설치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장의 설치에 관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21條第3項중 “시장 또는 군수는 第19條第3項”을 “시장·군수는 第19條第6項”으로 한다.

第21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 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市長·郡守는 駐車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運營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주차요금의 收入金과 第19條 第4資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2. 第24條의 2 의 規定에 課徵金의 徵收金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政府 補助金
5. 都市計劃稅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金額

③第1項의 규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관리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체의 條례로 정한다.

④市長·郡守는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장의 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을 받은 자에게 委託手数料 외에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장의 管理運營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會計로부터 補助할 수 있다.

⑤市長·郡守는 路外駐車장의 설치자에게 駐車場特別會計가 설치된 경우 그 회계로부터 路外駐車場設置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 (주차요금등의 使用制限) 市長·郡守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運營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2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路外駐車장의 관리자(建築物附設駐車場중 第19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장의 용도로 전용된 建築物附設駐車장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24條의 2 第1項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市長·郡守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공사의 中止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하거나 300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違反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된 때

第24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4條의 2 (課徵金處分) ①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の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郡守가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29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號 및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12條第2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을 設치한 자
3. 第19條第1項·第3項 및 第6項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第19條의 2의 규정에 의한 轉用許可 또는 申告없이 路外駐車場의 용도로 轉用한 자
4. 第19條의 4 第1項의 규정에 違反하여 建築物附設 駐車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을 設치한 자
2. 第1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管理規程 또는 第1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申告한 管理規程에 定한 金額을 초과하여 駐車料金を 받은 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第19條의 2 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의 供用을 증지 또는 廢止한 者
2. 第17條第2項(第19條의 2 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違反하여 路外駐車場의 이용을 拒絶한 者
3. 第18條第1項(第19條의 2 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이용을 關하여 필요한 표지를 設치하지 아니한 者

4. 第25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當해 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규정에 의한 市長·郡守의 過怠料 處分을 받은 자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當해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⑥第4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2條를 第31條로 하여 同條중 “第29條 내지 第31條”를 “第29條”로 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罰則適用의 特例) 第29條의 罰則에 關한 규정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24條第1項 및 第2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하여는 市長·郡守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4條第1項·第4項, 第7條第1項·第2項·項10條第1項, 第16條, 第19條第6項(중건의 第3項), 第23條第1項·第2項·第3項, 第24條第2項, 第25條 第1項중, “市長 또는 郡守”를 “市長·郡守”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주차장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郡市計劃으로 決定되어 設치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本法에 의하여 設치된 것으로 본다.

정다운 우리사이 청탁으로 멀어진다